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가.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공연 및 영화상영과 전시회 등 행사시 무료 초대권의 발부범위를 10%내로 하며 사회취약계층과 기타 소외계층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하여 문화향수의 기회를 넓히고

나. 성주군에서 자체 기획한 공연에서 관람료의 군 자체수입 처리와 관람료의 책정을 기획자인 성주군수가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본 조례 제16조 2항에 의거 관람권의 발매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에 전산발매의 경우 그 검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

3. 주요내용

가.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으며, 대상·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함

나.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 검인 생략

다. 예매수수료는 입장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결정

라. 유료관람권 발행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

마. 자체 기획한 공연에서 징수한 관람료는 군 수입으로 하며, 각 공연의 관람료는 군수가 정함

4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지역예술의 진흥 및 특색있는 문화창달의 군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주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다양화, 전문화하기 위한 자체기획 공연의 수입과 관람료의 결정을 조례로 하며, 그리고 관람료의 감면범위를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위임 근거를 두며,

○ 입장권의 전산발매의 경우, 검인의 생략근거와 유료관람권 발행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

○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새로운 지역의 문화창조를 위한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합목적성과 합법성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됩니다.

○ 참고로, 현 조례상 문화예술관장의 임무에 대하여는 사무위임의 근거마련이나 혹은 단체장인 성주군수로 표기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